



교육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대학 등 소속 연구자의 연구물 저자정보 정비 조치 결과 제출 요청

1. 관련

- 가. 교육부 학술진흥과-4226(2018.7.31.)
- 나. 교육부 학술진흥과-5102(2019.9.19.)

2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3. 우리부는 지난 9월 「**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**」 개정(2018.7월)에 따른 **후속조치 필요 사항**을 재안내하고, 각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**연구결과물 관리시스템(대학 업적관리시스템)**의 저자 정보를 2019년 12월 말까지 **확인·정비 완료**하여 **조치결과**를 우리부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.

【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】 (교육부 훈령 제263호, 2018.7.17)

제5조(연구자의 역할과 책임)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9.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, 직위(저자정보)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

제6조(대학 등의 역할과 책임) ⑦ 대학 등은 학술지 발간, 학술대회 개최, 연구업적 관리 등을 할 경우, 관련 연구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,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4. 11월 현재까지 정비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조치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**[붙임2]**를 참조하여 **기관의 시스템상의 저자 정보를 최종 점검**하고, **[붙임3]**의 양식에 따라 **기한을 엄수하여 조치 결과를 공문으로 제출**하여 주시기를 재차 요청드립니다.

※ 제출처 :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 대학학술정책관 학술진흥과

붙임 1.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1부.

2.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 후속조치 필요사항 1부.

3. (양식) 대학 연구물 저자정보 정비 조치결과 제출 양식. 끝.

교 육 부 장 관



수신자 고등교육기관전체, 한국연구재단이사장, 학술단체

주무관 **안경주** 행정사무관 **정아름** 학술진흥과장 **윤소영** 2019.11.11.

협조자

시행 학술진흥과-7206 (2019. 11. 12.) 접수

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,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(어진 / www.moe.go.kr
등)

전화번호 044-203-6879 팩스번호 044-203-6875 / angj92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2019 한-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-메콩 정상회의(11.25-27, 부산)